

201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19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법원행정 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 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법원행정고등고시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
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Level 2의 65점	625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 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 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 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형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1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접수기간 : 6. 7. ~ 6. 13. (취소마감일 : 6. 20.)	제1차시험	7. 30.(화)	8. 24.(토)	9. 17.(화)
		제2차시험	9. 17.(화)	11. 1.(금) ~ 11. 2.(토)	12. 3.(화)
		제3차시험	12. 3.(화)	12. 12.(목)	12. 20.(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합격자 발표·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만 공고·게시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수수료(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